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5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관광문화과장)

가. 제안이유

-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으로 평창군 관광·문화·축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재단 설립 형태 및 설립·운영 근거(안 제2조)
- 재단 사업, 출연 및 보조(안 제3조 ~ 제4조)
-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사무처 등(안 제5조 ~ 제10조)
- 재산, 운영 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안 제11조 ~ 제14조)
- 업무 위탁 대행, 공무원 파견, 지도·감독 등(안 제15조 ~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안 제3조제9호 중 ‘운영’ 을 ‘운영 지원’ 으로 수정한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75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4. 5. 17.

제안자 : 조례특위위원장

1. 수정이유

- 민간 축제위원회의 주체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광문화재단의 사업내용을 수정함.

2. 수정내용

-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사업내용 수정(안 제3조)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9호 중 ‘운영’ 을 ‘운영 지원’ 으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생략) 9. 축제 기획 및 <u>운영</u> (생략)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생략) 9. 축제 기획 및 <u>운영 지원</u> (생략)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5. 17.)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5. 7.
- 회부일자 : 2024. 5. 17.
- 상정일자 : 2024. 5. 17.

2. 제안이유

-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으로 평창군 관광·문화·축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재단 설립 형태 및 설립·운영 근거(안 제2조)
- 재단 사업, 출연 및 보조(안 제3조 ~ 제4조)
-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사무처 등(안 제5조 ~ 제10조)
- 재산, 운영 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안 제11조 ~ 제14조)
- 업무 위탁 대행, 공무원 파견, 지도·감독 등(안 제15조 ~ 제20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자체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자·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지자체장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제20조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해 평창군의 관광·문화·축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사업)에서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을 명시함.

< 평창관광문화재단 사업 >

1. 관광·문화예술·축제 시책 수립 지원
2. 관광·문화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콘텐츠 확충
3. 관광·문화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컨설팅
4. 관광·문화·축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5. 관광·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6. 관광·문화예술·축제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7. 지역관광협의체 운영 및 관광여건 개선 사업
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¹⁾ 각호의 사업
9. 축제 기획 및 운영
10. 군수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물구비캠핑장 관리 및 운영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

○ 안 제4조(출연 및 보조)에서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게 함.

○ 안 제9조(사무처)에서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직원을 두고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 및 업무 등의 세부사항은 정관 및 규정을 따르도록 함.

1)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12조(운영재원) 및 제13조(수익사업)에서는 재단의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 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게 하고 설립 목적의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서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대상²⁾에 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로 판단되어 규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공무원의 파견)에서 군수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9조(지도·감독)에서 군수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 등에 관한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사항에 대해 지도·검사 할 수 있고, 필요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과거 청산된 문화도시예술재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던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5. 종합검토의견

- 지역의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된 전담기구인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의 위배되는 사항 없이 자치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평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붙임 2]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5
----------	-----

제출년월일 : 2024. 5.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으로 평창군 관광·문화·축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재단 설립 형태 및 설립·운영 근거(안 제2조)
- 재단 사업, 출연 및 보조(안 제3조, 안 제4조)
-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사무처 등(안 제5조~안 제10조)
- 재산, 운영 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안 제11조~안 제14조)
- 업무 위탁 대행, 공무원 파견, 지도·감독 등(안 제15조~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군비, 물구비캠핑장 운영 수입금 (비용추계서 참조)
-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5.~2024. 4. 25.) 결과, 접수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실-6678호(2024. 4. 26.)]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6890호(2024. 04. 30.)]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 문화예술 및 축제의 진흥을 위한 평창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평창관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창군 관광·문화예술·축제 시책 수립 지원
2. 관광·문화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문화 콘텐츠 확충
3. 관광·문화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컨설팅
4. 관광·문화·축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5. 관광·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6. 관광·문화·축제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7. 지역관광협의체 운영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
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9. 축제 기획 및 운영 지원

10. 평창군(이하 “군”라고 한다)의 관광·문화·축제 발전을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물구비캠핑장 관리 및 운영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4조(출연 및 보조)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

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는 관광, 문화예술, 축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며, 이사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행정·법률·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구성과 임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 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재단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둔다.

② 직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의 상임이사직을 수행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직원 수, 업무,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직원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운영 자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업무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관광·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

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생략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재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 비용 필요
-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출연 및 보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출
- 강원특별자치도에 공모신청한 사무실 예정지 인근 물구비캠핑장 운영 수입금으로 필요경비 일부 충당

나. 추계 결과

○ 세입

<표1> 캠핑장 운영 수입

(단위 : 천원, %)

연도	사이트수	일 평균단가	연평균 사용률	연간 수익금	비 고
2025	-	-	-	-	2026년부터 운영
2026	100	50	20	365,000	
2027	100	50	21	383,000	
2028	100	50	22	402,000	
2029	100	50	23	423,000	

○ 세출 : 15,003,000천원

- 자본금 : 100,000천원
- 인건비 : 878,572천원(2024년 공무원 인건비 대비 매년 25% 인상을 적용)
- 사무처장(5급) : 66,913,296원 x 1명[(기본급 3,910,273원 + 수당 593,541 + 복리후생비 631,027원 + 보험부담금 441,268원) x 12월]

- 팀장(6급) : 51,316,050원 x 3명[(기본급 2,982,033원 + 수당 468,074 + 복리 후생비 488,203원 + 보험부담금 338,027원) x 12월]
- 직원(7급) : 42,415,899원 x 3명[(기본급 2,468,303원 + 수당 398,635 + 복리 후생비 386,830원 + 보험부담금 280,891원) x 12월]
- 직원(8급) : 35,985,434원 x 7명[(기본급 2,070,295원 + 수당 344,836 + 복리 후생비 347,030원 + 보험부담금 236,626원) x 12월]
- 직원(9급) : 33,620,587원 x 8명[(기본급 1,923,925원 + 수당 325,052 + 복리 후생비 332,393원 + 보험부담금 220,345원) x 12월]
- 파견수당(2명) : 월 400,000원 x 2명 x 12월
- 운영비 : 219,643천원(인건비 대비 25% 적용-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 사업비 : 2,037,000천원

<표2> 평창관광문화재단 2025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연간사업비	비 고
관광	· 관광홍보	336,000	· 평창군 2024년 예산서 참조
	·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사업	100,000	· 2024년 DMO 공모사업 기준
	·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108,000	· 평창군 2024년 예산서 참조
문화	· 문화예술단체 육성	177,762	· 평창군 2024년 예산서 참조
	· 문화콘텐츠 홍보	150,000	· 평창군 2024년 예산서 참조
	· 찾아가는 문화활동	18,667	· 평창군 2024년 예산서 참조
	·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	20,000	· 평창군 2024년 예산서 참조
	·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63,430	· 평창군 2024년 예산서 참조
축제	· 축제 콘텐츠 개발	48,000	· 평창군 2024년 예산서 참조
	· 축제 지원	1,015,000	· 평창군 2024년 예산서 참조
소 계		2,036,859	

다. 재원조달 방안

- 군 일반회계, 물구비캠핑장 운영 수입금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장 김 복 재
연락처	(033) 330 - 22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365,000	383,000	402,000	423,000	1,573,000
운영수입	-	365,000	383,000	402,000	423,000	1,573,000
세 출	3,236,000	2,849,000	2,911,000	2,974,000	3,033,000	15,003,000
자본금	100,000	-	-	-	-	100,000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1,099,000	761,000	771,000	780,000	790,000	4,201,000
사업비	2,037,000	2,088,000	2,140,000	2,194,000	2,243,000	10,702,000
재원 조달	3,236,000	3,214,000	3,294,000	3,376,000	3,456,000	16,576,000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 세					
자 체 수 입	소 계	3,236,000	3,214,000	3,294,000	3,376,000	3,456,000
	지방세					
	세외수입	-	365,000	383,000	402,000	423,000
	군비	3,236,000	2,849,000	2,911,000	2,974,000	3,033,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